

글 _ 김윤희(공인노무사)

산전후휴가급여와 연장수당 할증률 적용범위

벤치 기업 인사 · 노무 & A 시리즈



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

Q 산전후휴가와 관련해 사업주가 부담했던 60일분의 유급급여가 2006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지요?

A 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“...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”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따라서 새롭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60일의 유급휴가 또한 그 금액의 상한이 적용되겠으나, ‘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’라는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지급받아 왔던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그 차액에 한해서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아울러 6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고용보험에서의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이루어지는 바,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60일의 유급휴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. 3개월차의 급여분과 관련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모두 고용보험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.

연장수당 할증률 경감은 최초 4시간까지만

Q 현재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. 올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현행 탄력

적 근로시간제(1주 48시간, 1주 40시간 근무)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이 경우 48시간 근무주는 8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루어지지만 2주 단위로 보면 1주당 평균 4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, 48시간 근무주의 8시간 연장근로분 전체에 대해서 25% 할증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
A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‘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’ 할 수 있고, 주 40시간제 적용 후 3년간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‘12시간’에서 ‘16시간’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, 또한 그 한도를 16시간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‘최초의 4시간’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할증률을 25%로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.

25% 할증률을 적용하는 이유는 법개정(근로시간 단축)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. 따라서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전환해야 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시간 외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 25%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, 이의 적용기준은 주당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‘최초의 4시간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
그러므로 2주 단위 평균 4시간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25% 할증률의 적용을 2주 단위로 확대, 그 평균값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. 48시간의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% 할증률을,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50%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